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국립민속박물관 -

2020. 5.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Ⅱ.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원	2
2. 예산 현황	3
3. 주요 업무	3
Ⅲ.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 사항	6
가. 목차	6
나. 명세	6
(1) 개방형수장고 개관·운영 기본계획 수립 소홀(주의·통보)	7
(2) 박물관 교육강사 관리업무 부적정(주의·통보)	15
(3)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안전점검 개선 필요(통보)	22
(4) 교육보조재료 개발 저작권 권리관계 설정 미흡(통보)	26
(5) 교육실습과정 운영·관리 부적정(주의)	30
(6)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주의·통보)	35
(7) 직원 복무처리 부적정(주의·통보)	42
(8)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49
(9)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주의·통보)	54
(10) 수장고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필요(통보)	60
(11) 정보화 사업 소요예산 산출 부적정(주의)	65

(12) 민속아카이브 자료 공개 및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통보)	75
(13)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외국어 누리집 관리 소홀(통보)	81
(14) 에너지저장장치를 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하여 예산 절감 및 화재안전성 확보 등에 기여(통보, 모범사례)	85
※ (기타) 현지조치 사항	90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국립민속박물관(1946년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의 조직운영 전반 및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이 수행한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 자료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 밖에 인사, 채용 등 관리의 적정성 및 회계규정 준수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20. 4. 20.부터 같은 해 4. 29.까지 8일 간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등 총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였다.

【 감사반 구성 】

소 속	직 급 (직 위)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기술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전산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행정주사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행정주사	

II.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원

국립민속박물관은 1946년 4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최초 개관하였고, 1993년 2월 현 위치로 이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은 1관장 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비공무원 165명 제외) 고위공무원(학예 나급) 1명, 학예연구관 15명, 학예연구사 35명, 4급 2명, 5급 4명, 6급이하 36명 등 총 93명이다.

□ 조직도 : 1관장 6과



□ 인원 (정원 87명, 현원 82명)

(2020. 1. 1.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고위공무원단 (학예 나)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일반직		
					4급	5급	6급 이하
정원	93	1	15	35	2	4	36
현원	85	1	13	32	2	4	33

* 비공무원 165명 (공무직 123, 기간제 42)

2. 예산 현황

국립민속박물관의 2020년 총예산은 51,330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50,828백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02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등 기본경비 7,268백만 원,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등 주요 사업비에 41,804백만 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에 1,756백만 원을 배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으로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에 502백만 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명	'19년 예산 (A)	'20년 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계 (일반회계+기금)	35,728	51,330	15,602	43.7
1. 일반회계	35,250	50,828	15,578	44.2
가. 기본 경비	7,098	7,268	170	2.4
○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6,279	6,417	138	2.2
○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75	382	7	1.9
○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444	469	25	5.6
나. 주요 사업비	26,446	41,804	15,358	58.1
○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16,548	17,900	1,352	8.2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9,257	18,920	9,663	104.4
○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	4,000	4,000	100.0
○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641	984	343	53.5
다. 국민문화향유권 확대(문화기반과)	1,706	1,756	50	2.9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1,081	1,125	44	4.1
○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625	631	6	1.0
2. 관광진흥개발기금	478	502	24	5.0
○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78	502	24	5.0

3. 주요 업무

- 민족 전통문화의 보급 및 선양
- 생활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 인류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 등의 조사·연구
-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16개 사안에서 총 21건의 위법·부당 사항(주의 8, 통보 11, 현지조치 2)이 확인되어 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명, 원)

합계			문책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계 (인원)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인원)		
21		1			8			11	10		1 (1)		2

가. 목적사업 분야

-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사업 관련, 본관 수장고와 파주 수장고와의 구체적 관계 설정을 통한 각 수장고의 활용방안과 개방 형태의 수장 전시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인 소장품 재배치 및 이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개관·운영 기본계획 수립 없이 예산관련 사업 위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장품 관리 미흡(본관 존치 소장품과 개방형수장고 이전 소장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본관 수장고 존치 소장품에 대한 세부적인 재배치 및 수장고 공간 활용방안 등이 미 수립된 상태임)
- 강사등록제 규정(자체 내규, '강사 운영규정')과 달리 강사등록 운영위원회 미운영, 강사 등록 운영계획 미수립, 규정에 따른 신규강사 선발 없이 기존의 '강사인력풀(총 310명)에서 필요 시 마다 교육 강사 선정, 교육시간 및 수업관리부 미작성 등 교육강사 관리업무 소홀
-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업체 안전점검(연 1회) 미실시, 전시시설·전시품·진열장 등의 관리를 포함한 안전상태 일일점검 실시 및 보고 주기를 임의 변경·운영(1일 2회→1일 1회/매일→월 1회), 점검 기록사항 누락 등
- 교육실습생 실습과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이전에 교육

실습생(16년, 12명) 선발, 교육실습생 명부와 수료증 발급대장 기록·관리를 소홀히하는 등 교육실습 과정을 부적정하게 관리·운영

나. 기관운영 분야

- 보훈가산점 적용 대상이 아닌(선발인원 3명 이하) 총 46건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채용에서 보훈가산점을 잘못 부여하여 6명의 불합격대상자가 서류전형에서 합격하거나, '문체부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 사전심사 미실시(2건) 등 채용업무 부적정
- 사전근무명령 없이 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 사용(16건), 공가 대상이 아닌 건강검진 재검진에 공가 승인(7건), 규정에 따른 관련 증빙 제출 없이 자녀돌봄휴가 사용(171건) 등 복무처리 부적정
- 관련 규정과 달리 경쟁입찰 공고기간(40일) 미준수(11건), 기술평가 배점한도 변경 후 사유 미공고(19건), 평가항목의 최고 배점 한도(30점)를 초과하여 임의로 배점(8건) 등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부정적 처리

다. 공사, 시설, 정보화사업 분야

-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컨테이너 총 16개동을 민속자료 보관 창고 등으로 관리·운영하고 그중 4개 동은 물품관리대장에도 미등재, 주출입구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총 8건의 공사에서 하자검사 미실시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세 기능(서비스) 목록 등 기초자료 산출 내역 없이 개발 원가를 산출하거나,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미사용 기능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유지보수금액 산정
- 국립중앙박물관과 달리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 내부에는 CCTV가 없어 향후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 설치 필요
- 개방형수장고 전기공사 담당공무원 KK(공업 8급)는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에너지저장장치를 전문가 문의, 산업부 협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 설치하여 예산 절감, 에너지성능 향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 저감 등에 크게 기여(모범사례)

2. 처분요구와 통보 사항

가. 목차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고
		주의	통보			
1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통보	개방형수장고 개관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소홀		
2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통보	박물관 교육강사 관리업무 부적정		
3	국립민속박물관	통보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안전점검 개선 필요		
4	국립민속박물관	통보		교육보조재료 개발 저작권 관리관계 설정 미흡		
5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교육실습과정 운영·관리 부적정		
6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통보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7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통보	직원 복무처리 부적정		
8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9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통보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10	국립민속박물관	통보		수장고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필요		
11	국립민속박물관	주의		정보화 사업 소요예산 산출 업무처리 부적정		
12	국립민속박물관	통보		민속아카이브 자료 공개 및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13	국립민속박물관	통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외국어 누리집 관리 소홀		
14	국립민속박물관	통보(모범사례)		에너지저장장치를 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하여 예산 절감 및 화재안전성 확보 등에 기여	1	
15	국립민속박물관	현지주의		국립민속박물관회 다문화교육사업 관여 부적정		
16	국립민속박물관	현지주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나. 명세 :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개방형수장고 개관·운영 기본계획 수립 소홀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문화재청)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2014년경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1)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사업부지(국립중앙박물관 연접 용산가족공원 부지)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경복궁 복원 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별표 1 참조)

이후 과밀한 수장환경과 지속적인 유물수집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에서 ‘개방형 수장고 등 지원시설 건립사업’을 분리하여²⁾, 2016년부터 [별표 2]와 같이 ‘과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이하 “개방형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2)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 : (1단계 사업) 개방형수장고 등 지원시설, (2단계 사업) 본관 이전 등 핵심시설

수장고”라 한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2017년 12월에 개방형수장고 기본·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관련 예산 103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8. 3. 7. [표 1]과 같이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계획 수립 TF」(이하 “운영계획 수립 전담팀”이라 한다) 구성·운영하였다.

[표 1]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계획 수립 TF」 운영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기재부 총사업비 2차 심의 후 공사발주 예정), 2018년도 사업비 103억원이 확정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 필요 ○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개방형수장고+정보센터)의 체험형 수장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 및 실행계획 수립 시급
구성계획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운영계획 수립 팀장 유물과학과장] --- B[시설운영분과] A --- C[유물분과] A --- D[아카이브분과] A --- E[보존분과] A --- F[교육분과] </pre> </div> <p>※ 운영계획 수립 총괄의 팀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고 각 분과장은 학예연구관이 담당하며, 각 분과별 학예연구사로 구성하며, 개방형수장고 및 수장전시실 전시운영 계획은 유물분과에서 마련 예정임</p>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방법 : 2018년 3월~건립 시 / 정기(월) 또는 수시 회의 ○ 장소 : 대회의실 및 건립현장 ○ 주요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향, 기능과 역할, 조직 구성, 운영 기본계획 - 개별 수장고별 이전대상 자료선정 및 보관, 활용 방안 -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수집-보존-관리-전시-교육 연계방안 - 중장기 유물 및 아카이브 수집 및 관리 방안 수립 - 수장고 환경관리 및 소장품 보존 방안 수립 - 전시 및 교육 운영 프로그램 수립 -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운영자문위원회 부의 안건 사전 검토 * 2014년 □□에서 수행한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를 토대로 한 운영계획 검토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2. 판단기준

위의 개방형수장고 운영계획 수립 TF 운영계획에 따르면 2014년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개방형수장고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의 주요안건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개관 준비 TF’(이하 “개관 준비 TF”이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면서 운영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진행상황 점검, 소장품 격납용 수장대 설치, 개방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소장품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2014년 12월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장고 이전에 앞서 소장품 목록화 작업을 통해 이전 대상 소장품의 목록 확정, 소장품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맥락적 정보 생성, 본관 수장고와의 관계 설정 등 개방형 수장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제안³⁾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박물관은 노후하고 과밀한 수장환경 개선과 향후 유물수집 수요 등으로 인해 개방형 수장고 건립이 추진되고 2021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형 수장고의 차질 없는 개관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본관 수장고와 파주 수장고와의 구체적 관계 설정을 통한 본관 및 파주 수장고 활용방안과

3)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안 주요내용)

- ① 소장품 목록화 작업을 통해 이전 대상 소장품의 리스트를 확정하고, 소장품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맥락적 정보 생성 필요,
- ② 개방범위, 개방정도, 본관과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주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 작업 필요,
- ③ 본관 수장고와의 관계 설정 필요(소장품 이전 비용 산정, 이전 대상 수장품 선정기준 등), ④ 공개대상 소장품의 스토리 발굴, ⑤ 개방형수장고 전시물의 교체 주기를 상설형과 기획형으로 구분하여 전시의 다양성 확보방안 필요, ⑥ 교육대상의 세분화와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⑦ 수장고의 분류기준 확정 및 수장별의 마감재, 향온향습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수집·수장 정책 필요, ⑧ 개방형 보존과학실 운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필요, ⑨ 보존과학실의 이원화 운영계획 등에 대한 후속 검토 필요, ⑩ 정보센터의 주기능이 위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필요 등

이에 따른 체계적인 소장품 분류, 재배치 및 이전 등을 포함하여 개방형 수장고 개관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개방형 수장고 운영계획 수립 전담팀의 운영 실적과 운영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파악한 결과, 개방형 수장고 운영계획 수립 TF는 별도의 종합적인 개방형 수장고 개관·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관 준비 TF에서 마련한 ‘개방형수장고 운영 종합계획’⁴⁾에 따라 소장품 격납용 수장대 설치, 소장품 이전사업, 개방형수장고 전시실 조성 등 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 위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장품 이전사업의 경우, 박물관은 수장고가 본관과 파주로 이원화되고 파주 수장고는 개방형으로 계획되는 만큼 각 수장고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본관 존치 소장품과 개방형 수장고 이전 대상 소장품에 대한 명확한 선정(분류)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기준과 수장고 개방 정책방향(개방 범위, 개방 정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각 수장고의 면적과 파주 수장고의 보존 환경 등에만 중점을 두고 파주 수장고 이전대상을 선정⁵⁾하는 등 구체적·체계적인 소장품 이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채 소장품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박물관은 2019년 9월~12월, 유물과학과 인력을 중심으로 ‘파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개관 준비팀’(행정지원팀, 수장고관리팀, 보존과학팀, 전시운영팀, 교육운영팀)을 구성하여 13차 회의를 거쳐 분야별 진행상황 점검 및 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개관준비팀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나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는 종합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파주 이전대상 소장품 선정기준 : 재질별 활용 면적 → 파주 수장고별 보존환경 → 고효율 격납을 위한 수장대

또한 박물관은 소장품을 파주 수장고로 이전한 후 본관 수장고에 존치되는 소장품의 재배치, 공간 부족으로 외부창고에 보관하던 민속자료 등의 재배치 등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본관 수장고 등의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러한 본관 수장고 소장품 재배치 등 공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2018년 3월~9월 기간 동안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계획 수립 전담팀 계획(안)」에 따라 5개 분과를 구성하여 6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 9월~12월 기간 동안, 유물과학과 인력을 중심으로 ‘파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개관준비팀’을 구성하여 13차 회의를 거쳐 분야별 진행상황 점검 및 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나, 종합적인 개관·운영 기본계획 수립에는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 ① 파주 개방형수장고 건립사업 관련,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방형수장고 개관 및 운영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소장품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관 수장고 소장품 재배치를 포함한 세부적인 수장고 활용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박물관은 2020년 업무계획 수립 시 본관 존치 소장품은 보존환경이 우수한 수장고를 우선 활용한다는 방향은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장품 재배치 방안 등 수장고 활용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박물관 교육강사 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표 1]과 같이 어린이·청소년·성인, 전문가·외국인·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속문화 및 인문학 강좌, 전통문화 체험,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교육, 방과 후·주말·방학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계기별 다양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2016년~2019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 종류	92종	79종	66종	54종
교육 횟수	2,197회	1,899회	2,150회	2,403회
참여 인원	283,012명	339,090명	177,621명	193,547명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연도별 업무계획 자료 재구성

이에 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강사¹⁾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

1) 「국립민속박물관 강사 운영규정」(2018.4.10. 개정)에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담당과목의 강의를 맡는 자를 말하며, 선발강사와 의뢰강사로 구분함. 이전 규정(2015.6.22. 개정)에는 박물관 교육강사로 선발되어 박물관 강의를 맡고 있는 자를 선발강사라 하였고,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구분함

적 관리를 위해 2012. 4. 23. 강사등록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민속박물관 강사 운영규정」(이하 “강사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고 있다.(2015. 6. 22, 2018. 4. 10. 개정)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박물관의 강사 운영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강사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강사의 선발 등을 위하여 ‘강사등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교육강사의 선발기준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강사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강사등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강사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강사등록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강사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강사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교육강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강사의 등록 기간(위촉기간)은 강사의 해당 교육 운영기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사의 교육시간 및 수업 관리를 위해 관내·외 교육강사 수업시간 확인부와 교육강사 수업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은 강사 운영규정에 따라 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의 등록기간(위촉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해촉, 재등록, 신규 선발·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교육강사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20년 4월 기간동안 교육강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박물관은 강사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도 않았고,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강사등록 운영계획을 수립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강사의 등록기간(위촉기간)²⁾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촉, 재등록의 절차를 진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강사의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강사를 선발·등록하여야 하는데도, [별표]와 같이 2018년도 이후에는 교육강사를 선발(위촉)하지 않은 채 2012년도부터 2017년도 기간에 위촉(재위촉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강사인력풀(주강사 154명, 보조강사 156명 등 총 310명)에서 필요한 교육강사를 선정하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강사의 수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서식에 따라 강사의 교육시간 및 수업시간 확인부와 수업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³⁾

이에 대하여 박물관은 감사 시 강사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업무에 적용되는 정도가 낮고, 박물관 교육 수요에 비해 과도한 등록강사(강사인력풀)를 운영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규정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박물관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 선발, 지속적 역량 강화, 체계적 관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은 교육강사 선발·교육·운영·해촉 등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 강사 운영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위촉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재등록(위촉)함

3) 교육 강사 수업시간 확인부는 2018년까지, 수업관리대장은 2016년까지만 작성·관리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내부 검토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사운영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 ① 「국립민속박물관 강사 운영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교육강사가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교육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민속박물관 강사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박물관 교육강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안전점검 개선 필요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2010년부터 어린이박물관 전시실과 야외마당, 야외 휴게공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위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박물관은 전시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시실 내 시설물의 안전 및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제11조 및 12조에 따르면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체험물과 시설물,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일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사항, 관람통계, 교육

실시, 조치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어린이박물관과장) 등에게 일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은 일반 전시실과 달리 1)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구성이 많고, 전시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의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일 2회 이상 점검(2012. 11. 30. 규정에 조항 신설)으로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²⁾

따라서 박물관은 일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전시물이나 체험기구 등의 변형이나 모서리 완충처리 여부, 전시실 바닥상태, 어린이 관람 동선 적정성 여부, 전시물과 진열장의 이상 유무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에 따른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박물관은 위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시실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시실 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일일점검의 경우, [표 2]와 같이 2018년 10월 이전에는 매일 3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일 보고하였으나, 2018.

1)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전시실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대해 일일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

2) 어린이박물관은 쾌적한 관람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 1회 30분당 입장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는 관람을 금지하고 있음(「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제5조 및 제7조)

3)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35.97%(7,580건)이고,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39.6%(3,006건), 추락 28.5%(2,167건), 부딪히는 사고 20.8%(1,581건)이 대부분임

10.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매일 1회만 점검하고 있으나 기록 사항(점검시간, 관람통계, 전시연계프로그램 운영 횟수, 교육실시 사항)을 누락하였고, 매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월 1회만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점검 및 보고 현황(2017년~2020년 4월)

구 분	전시 점검 및 운영		관람통계
	전시점검	전시연계프로그램	
2017. 1. 1.~2018. 9.30.	일 3회	작성	
	일 1회 보고		
2018.10. 1.~2020. 4.30.	일 1회	미작성	
	월 1회 보고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박물관은 전시실 안전점검은 전시실 규모, 전시품 관리상태, 전시품 가치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할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2018년 10월부터는 전시실 등의 이상유무 관련 일일점검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에 의한 수기방식에서 「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전자결재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일부내용이 누락이 있었을 뿐 규정과 다르게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박물관 시설 안전점검과 전시품(전시자료·체험물 등) 및 전시시설 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일일점검은 전시품의 안전한 보관·전시(도난이나 훼손 방지 등)를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어린이라는 특성 상 전시 시설이나 전시품, 전시실 내부 관리상태 등으로부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박물관 전시규정’에 별도의 일일점검일지를 마련하여 실시하여 온 취지를 감안하여 전시실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한 효율적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시실 시설물에 대한 연 1회 안전점검을 자체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지 여부와 현행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일일 점검·보고 주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전시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체, 어린이 관람객의 특성을 반영한 전시품·체험품, 전시실 내·외부 등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 점검 사항, 효과적 점검 주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박물관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교육보조재료 개발 시 저작권 권리관계 설정 미흡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지역의 민속생활사박물관(이하 “지역박물관”이라 한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박물관별 특성화를 통해 지역박물관이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보조재료(민속생활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주제별 관련 보드·카드게임, 모형만들기 키트, 교재·활동지 등) 등을 개발·지원하는 ‘민속생활사 박물관협력망 교육개발지원 사업(이하 “교육개발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사업추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립민속박물관 교육개발지원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예산 ¹⁾	지원박물관 수	사업 업무분담
2017	100,000	ⒶⒶ 박물관 등 10개 지역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예산지원 및 집행, 사업자 공모 및 선정, 개발 자문 및 사업자 평가 등 ○(지역박물관) 교육 보조자료 발간 계획수립 및 제작, 교보재 개발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발표 및 보고서 제출 등
2018	100,000	ⒷⒷ 박물관 등 10개 지역박물관	
2019	90,000	ⒸⒸ 박물관 등 9개 지역박물관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박물관은 위 사업을 위해 매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²⁾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 및 지원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표 2]와 같이 지원 대상 박물관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보조재료 등을 개발하고, 소요비용을 집행하고 있다.³⁾

[표 2]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교육개발지원 사업 체계

추진일정	1월~2월	1월~3월	3월~11월	11월~12월	11월~12월	12월
추진내용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지원기관 선정	사업 진행	사업결과물 제출	결과물 검수	사업결과물 최종결과보고 및 우수기관 선정
추진주체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지역박물관	지역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박물관이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위의 교육보조재료 등을 개발·제작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 권리관계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492호)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1)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역의 민속생활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보조재료 등 개발·지원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

2)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개요

- 목 적 : 박물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
- 가입기관 : 총 364개 박물관(2020.3.31. 기준)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 가입대상 :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 가입혜택 :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재, 교보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3) 제작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작비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

4)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권리를 말함. 여기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포함됨(한국저작권위원회,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위 사업 관련 저작권 등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계약(계약서 생략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저작권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개발지원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 등의 집행 현황(총 29건)을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용역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한 총 10건은 계약서류(과업내용서)에 저작권의 귀속 주체, 복제 금지 조항 등을 기재하여 저작권 권리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서를 생략하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총 19건에 대해서는 저작권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저작물을 복제·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⁶⁾

[표 3] '교육개발지원 사업' 저작권 권리관계 설정 현황(2017년~2019년)

(단위 : 건)

연도	지원건수	저작권 권리관계 설정 관련			
		일반예산 지출 건(수의계약 진행)		관서운영경비 진행 건	
		건수	권리관계 설정여부	건수	권리관계 설정여부
총 계	29	10	설정	19	미설정
2017	10	-	-	10	미설정
2018	10	5	설정	5	미설정
2019	9	5	설정	4	미설정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5)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하였음. 이중 “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는 박물관이 제작업체와 체결하는 계약 시 주요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6) 현재까지 교육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권리관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한편 저작권 권리관계를 설정한 계약의 경우에도 권리 주체, 제작물의 복제 및 반출 불가 등에 대해서만 명시⁷⁾되어 있으나, 저작권의 양도 범위, 양도 기간, 분쟁 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누락되어 있다.⁸⁾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지역의 민속생활사박물관은 협력망 교육개발지원 사업의 공동 저작권자로서 동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보조재료 등에 대한 제작의뢰 시 표준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 소지를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교육개발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보조재료 등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7) 과업내용서 중 기타 제작시방서에 ‘본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제작사는 제작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재하고 있음.

8)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와의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교육실습과정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은 박물관 실무과정(전시·조사연구·교육 등) 참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교육실습과정(구. 인턴십)¹⁾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²⁾

[표 1] 교육실습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 분	교육부서	교육내용	선발인원	수료인원	실습비 ³⁾ 지급액
2015년	섭외교육과	박물관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	4	3	36,582
	전시운영과	전시디자인 자료 조사 및 전시 지원	1	1	10,323
	유물과학과	서화보존처리 지원,아카이브 정리 등	4	4	39,992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교육 운영지원	5	5	52,675
	소 계		14	13	139,572

1) ‘인턴십’ → ‘교육실습과정’으로 명칭 변경(2017.8.30.)

2) 예산부족 등의 사정으로 2018년부터 교육실습생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구분	교육부서	교육내용	선발인원	수료인원	실습비 ³⁾ 지급액
2016년	섭외교육과	박물관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	1	-	2,701
	전시운영과	전시디자인 자료 조사 및 전시 지원	1	1	10,987
	유물과학과	소장품 등록 및 관리지원 등	5	-	38,164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교육 운영지원	7	3	48,403
	소계		14	4	100,255
2017년	섭외교육과	청소년 교육 운영 지원 등	2	2	23,357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교육 운영지원 등	6	6	56,050
	민속연구과	민속자료 기초자료 정리 등	3	3	15,528
	소계		11	11	94,935
계			39	28	334,762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실습과정 운영 규정」(국립민속박물관 예규 제180호, 개정 2017. 8. 30) 제3조에 따르면 박물관은 교육실습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실습생 선발 등을 위하여 총괄부서장(섭외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의 연구관 1인씩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교육실습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교육실습생의 선발기준 및 연간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교육실습생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 명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교육실습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며, 교육실습과정 이수시간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교육실습과정 이수시간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3) 교육실습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국립민속박물관 교육실습과정 운영 규정」 제10조), 박물관은 교통비 및 식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박물관은 교육실습생의 수요 규모와 시기를 파악하여 공정한 선발기준과 효율적인 연간 운영계획 등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고, ‘교육실습생 명부’와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실습과정과 관련된 증명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교육실습과정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교육실습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박물관은 2012년 및 2013년도에 각 1회 만 운영위원회를 개최⁴⁾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없이 교육실습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⁵⁾

한편, 당시 「국립민속박물관 인턴십 운영 규정」(국립민속박물관 예규 제143호, 개정 2013. 9. 9) 제4조에 따라 연간운영계획은 실습생의 모집분야, 운영시기, 선발인원, 신청자격, 신청시기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이후 교육실습생을 선발·운영해야 했는데도, 2016년에는 연간 운영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교육실습생 12명을 선발하였다.⁶⁾

또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3년간의 운영계획에는 선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인원도 적시되지 않아 모집분야별 서류

4) 운영위원회에서 인턴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5)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2015년과 2016년은 총괄부서에서 연간 운영계획을 기안하여 실습생 수요부서 협조를 거쳐 관장의 결재를 받았고, 2017년에는 실습생 수요부서 부서장의 협조 결재도 누락한 채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함

6) 2015.12.7. 2016년 교육실습생 선발계획 수립(섭외교육과장 전결) → 2015.12.28. 2016년 교육실습생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1.18. 2016년 운영계획 수립(관장 결재)

전형 합격자 배수에 대한 공고 없이 [표 2]과 같이 서류합격자가 선발되었다.7)

[표 2] 교육실습생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모집인원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2015년 ⁸⁾	섭외교육과	4	5	5	
	전시운영과	1	3	3	
	유물과학과	아카이브 정리 및 전시지원	3	10	4
		보존환경 / 분석 지원	1	-	-
		서화보존처리 지원	1	2	2
	어린이박물관과	5	11	8	
계	15	31	22		
2016년 ⁹⁾	섭외교육과	1	5	3	
	전시운영과	1	2	2	
	유물과학과	문화재 분석 보존 환경	1	2	2
		민속아카이브 수증자료 정리	2	8	4
		유물정리 보조	1	2	2
		유물정리(사진촬영 및 촬영보조)	1	1	1
	어린이박물관과	5	14	8	
계	12	34	22		
2017년 상반기 ¹⁰⁾	섭외교육과	2	5	3	
	민속연구과	2	6	4	
	어린이박물관과	5	21	10	
	계	9	32	17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교육실습과정 관련 증명자료 관리 부적정

이번 감사기간 중 수료증, 실습교육시간 이수확인서 등 교육실습과정 관련 증명자료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5년부터 2016년 기간에는 ‘교육실습생(인턴) 명부’와 ‘수료증 발급대장’이 기록·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교육 분야, 학교명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발급대장에는 부서장의 결재도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표 3]과 같이 3급 및 준학예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증명용¹¹⁾과

7) 교육실습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실습생 운영 및 선발계획에 선발기준을 포함하고, 모집공고 시 부터 전형단계별 합격자 배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8) 2015년 국립민속박물관 정기 인턴십 모집결과(섭외교육과-2219, 2014.12.26.)

9) 2016년 국립민속박물관 정기 인턴십 모집결과(섭외교육과-2102, 2015.12.28.)

10)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실습생 모집결과 보고 및 협조요청(섭외교육과-2244, 2016.12.22.)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예사 자격 요건 등)에 따른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으로 소정의

타기관 취업 시 제출 용도 등으로 발급신청이 빈번한 ‘교육실습 이수 확인서’의 발급대상도 교육이수시간, 주요 실습내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채 관리되고 있다.

[표 3] 교육실습생과정 수료증 등 증명발급 현황(2016년~2020년 3월)

(단위: 건)

구 분	수료증	교육시간 이수확인서
2016년	4	42
2017년	17	39
2018년	-	23
2019년	-	24
2020년	-	6
계	21	134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교육실습과정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 필요성과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실습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한 선발기준 및 연간 운영계획 심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교육실습과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앞으로 교육실습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실습과정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실습과정 관련 증명자료 및 발급사실에 대한 기록·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학위 등 취득 후 일정한 기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실습경력, 실무연수이수경력도 포함)을 요구함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2017년부터 2020년 3월 기간 동안 채용분야 기준으로 총 69건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실시하여 총 97명을 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취업지원가산점 부여 부적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 유형에 따라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가점 부여¹⁾하도록 되어 있고,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²⁾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등은 만점의 10%, 그 배우자와 자녀 등은 만점의 5% 가점 부여
2)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공기관 등은 3명 이하를 선발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없음(2014 헌마541 판례 참고)

따라서 박물관은 채용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가산점(이하 “보훈가산점”이라 한다)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 등에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의 2017년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공무직) 채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박물관은 [표 1]과 같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 총 66건 중 46건에 대하여 채용공고 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게 서류전형³⁾ 시 보훈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우대조건을 포함하였고, 보훈가산점 보유 응시자 총 14명에서 대하여 [표 2]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중 보훈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합격 대상인 총 6명의 응시자가 서류전형을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⁴⁾

[표 1] 3명 이하 채용 및 보훈가산점 우대 채용 현황 (단위 : 건)

소관부서	3명 이하 채용 건수	
	3명 이하 채용	보훈가산점 우대 채용
총 계	66	46
민속기획과	19	9
섭외교육과	5	4
전시운영과	11	11
민속연구과	1	0
유물과학과	20	18
어린이박물관과	10	4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위 [표1] 의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전형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는 심사기준(각 심사항목을 상중하로만 평가)이 적용되어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가 적용되지 않음(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2항 단서)

4) 보훈가산점을 부여받은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중 5명은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였으나, 1명은 최종 합격하였음

※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채용에 응시하여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채용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응시자의 채용공고 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하기는 어려움(참조판례 : 대법원 2006.9.8.선고 2004다18859판결)

[표 2] 보훈가산점 부여에 따른 서류전형 결과

연도	월	소관부서	채용분야	담당업무	보훈가산점 가점점수	서류전형 결과	
						합격여부	가점 미부여 시 합격여부
2018	3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업무	만점의 10%	합격	합격
2018	3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업무	만점의 10%	합격	불합격
2018	8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업무	만점의 5%	합격	불합격
2018	8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업무	만점의 10%	합격	불합격
2018	8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업무	만점의 10%	합격	불합격
2018	8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 청경지원	만점의 10%	합격	불합격
2018	8월	민속기획과	방호원	방호- 청경지원	만점의 10%	합격	불합격
2019	1월	민속기획과	조리원	조리업무	만점의 5%	합격	합격
2018	6월	전시운영과	학예보조원	아외전시장 운영 및 관리	만점의 5%	합격	합격
2018	8월	유물과학과	학예보조원	소장품 정리 및 등록	만점의 5%	합격	합격
2018	2월	어린이박물관과	학예보조원	전시 운영 보조	만점의 5%	불합격	불합격
2018	2월	어린이박물관과	학예보조원	전시 운영 보조	만점의 5%	합격	합격
2018	3월	어린이박물관과	학예보조원	전시 운영 보조	만점의 5%	불합격	불합격
2018	4월	어린이박물관과	학예보조원	교육 운영 보조	만점의 5%	불합격	불합격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미이행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이하 “문체부”라 한다)는 2018. 12. 14. 본부 및 소속기관에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문체부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을 통보하였고, 박물관(민속기획과)은 2018. 12. 17. [표 3]와 같이 「국립민속박물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이하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부서로 시행하였고, 그밖에 문체부의 사전심사제와 관련된 안내사항⁵⁾을 각 부서와 공유하였다.

[표 3]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18.12.17. 민속기획과)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배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이후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31.)에 따라 자체 운영계획 마련 및 실시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Q&A 송부 (2019.3.5.),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2019.12.12.), ▲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배포(2020.2.20.)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계약직 채용)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보충 시 기관 자체 검토 후 채용이 가능하나 신설 업무의 경우 운영지원과와 협의 및 최종 승인 후 채용 가능 ○ (비정규직 채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내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 마련, 사전심사위원회(3명~6명 이내) 승인 후 채용 및 운영지원과 통보 ○ (심사대상)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심사) 매년 4월까지 차년도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채용계획서 제출(붙임2) 및 기관 내 심사 후 심사결과를 차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 ○ (수시심사) 신규 사업 등 정기심사 시점 외 필요 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기관 내 심사결과 후 채용 및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 사전심사 운영 절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 채용부서 ▲ 채용계획서 작성 (정기:차년 / 수시:금년) ▲ 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5%;"> 심사·예산· 정원관리부서 등 ▲ 채용사유, 인원 및 기간 등을 심사 ▲ 심사 결과 운영지원과 송부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5%;"> 채용·예산부서 ▲ 심사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채용·심사부서 ▲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 인력현황 관리 </td> </tr> </table>	채용부서 ▲ 채용계획서 작성 (정기:차년 / 수시:금년) ▲ 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	심사·예산· 정원관리부서 등 ▲ 채용사유, 인원 및 기간 등을 심사 ▲ 심사 결과 운영지원과 송부	→	채용·예산부서 ▲ 심사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	채용·심사부서 ▲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 인력현황 관리
채용부서 ▲ 채용계획서 작성 (정기:차년 / 수시:금년) ▲ 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	심사·예산· 정원관리부서 등 ▲ 채용사유, 인원 및 기간 등을 심사 ▲ 심사 결과 운영지원과 송부	→	채용·예산부서 ▲ 심사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	채용·심사부서 ▲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 인력현황 관리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박물관은 사전심사제 대상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부서에서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심사부서(민속기획과)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은 위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시행(2018. 12. 17.)된 이후 사전심사 적용대상인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단기근로자) 채용절차(총 3회)를 진행하면서 [표 4]와 같이 단기근로자 채용(총 2회)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4]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이행 현황

연도	시기	소관부서	채용 명칭	채용 형태	근무 기간	채용 인원	사전심사제 이행 여부
2019	2월~5월	전시운영과	K-museums 지역순회 공동기획전 기간제 채용	기간제	4개월	4명	이행
2019	12월	전시운영과	경자년 쥐띠 해 '쥐구멍에 별 뜬날' 기획전(특별전) 관리요원 채용	단기 근로자	2개월	5명	미이행
2020	1월	전시운영과	미역과 콘부(다시마)-바다가 잇는 한일 일상 기획전(특별전) 관리요원 채용	단기 근로자	31일	3명	미이행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전형단계별 합격자배수 공개 및 외부심사위원 참여 확대 필요

박물관은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 공고 시 서류전형의 선발예정인원(합격자 배수)을 설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전형단계별로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⁶⁾토록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은 위의 총 69건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표 5]와 같이 외부 심사위원은 서류전형 25건(36.2%), 면접전형 36건(52.2%)에서만 참여하였고,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은 15건(21.7%)에 대해서만 외부에 공고⁷⁾하였다.

[표 5]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서류합격인원 사전 설정 현황

(단위 : 건수, %)

소관부서	총 채용건수 (A)	외부 심사위원 참여 관련				서류합격인원 사전설정 관련	
		서류전형		면접전형		사전설정 채용건수(B)	비율 (B/A)
		외부위원참여 채용건수(C)	비율 (C/A)	외부위원참여 채용건수(D)	비율 (D/A)		
총 계	69	25	36.2	36	52.2	15	21.7
민속기획과	19	4	21.1	14	73.7	14	73.7
섭외교육과	6	3	50.0	3	50.0	1	16.7
전시운영과	11	5	45.5	5	45.5	0	-
민속연구과	1	0	-	1	100.0	0	-
유물과학과	22	8	36.4	9	40.9	0	-
어린이박물관과	10	3	30.0	4	40.0	0	-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라. 공정·투명한 자체 채용지침 마련 필요

국가기관은 공공기관 채용절차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문체부도 일반적인 내용은 규정⁸⁾ 하고 있으나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 등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6)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하여 배포('19.4월)된,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 표준 매뉴얼'에 따라 각 전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채용공고 시 합격자 배수 공고 항목을 의무화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7) 사전에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설정·공고하지 않은 건(54건)은 별도의 기준 없이 채용예정인원의 1~7배의 인원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킴

8)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문화체육부 공무원 근로자 등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나, 동 규정에는 채용 공고기간 의무(7일 이상), 서류·면접전형 이행 의무, 관련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채용과정에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9개 학교, 4개 박물관 등 채용업무가 많은 소속기관을 파악한 결과, 위 기관들은 공정·투명한 채용업무를 위해 자체 세부절차(지침 또는 안내서)를 마련하여 각 부서에 시행·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박물관은 이러한 자체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69건의 채용을 부서별(같은 기간 동안 채용업무 담당자가 6개 부서 32명⁹⁾에 이룸)로 진행하면서, 이전의 채용 절차를 답습함으로써 위 “가.~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채용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 및 제도 상 필수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채용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채용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당시 담당자 및 관리자 모두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채용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더욱 공정·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① 직원 채용을 위한 보훈가산점 부여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 채용 시 사전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9) 사무관(학예연구관) 15명, 주무관(학예연구사) 17명

②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채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채용업무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직원 복무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정」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대체휴무 사용승인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고 한다) “제3장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

1)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인사, 복무 등에 대한 규정인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 제409호, 2020.3.31.시행)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1.13.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 개정·시행됨

무를 명할 수 있고, 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

그리고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대체휴무 권한을 가진 자가 구체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³⁾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박물관에서 승인한 대체휴무 사용내역(총 495건)을 점검한 결과, 박물관은 부서장의 사전 근무명령 없이 휴일근무를 하였는데도, 초과근무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표 1]과 같이 총 9건(5명)⁴⁾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승인하였다.

[표 1] 휴일 근무명령 없는 대체휴무 인정 내역

소 속	휴일근무일	대체휴무일	비 고
민속기획과	2018.04.14	2018.04.20	
민속기획과	2018.04.07	2018.04.13	
민속기획과	2018.08.11	2018.09.04	
민속기획과	2018.04.28	2018.05.08	
민속기획과	2018.04.07	2018.04.19	
민속기획과	2018.09.02	2018.09.20	
민속기획과	2017.11.05	2017.11.10	
민속기획과	2017.10.15	2017.10.19	
민속기획과	2017.09.02	2017.09.15	
민속기획과	2017.07.23	2017.07.26	
민속기획과	2017.04.23	2017.04.25	
민속기획과	2017.03.26	2017.04.07	

2)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3)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대체휴무 승인권한을 가진 자(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가 구체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메모보고나 e-사람 결재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기관 자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승인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됨(2018.2.23. 인사혁신처 국민신문고 답변)

4) 2017년~2020년 3월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한 직원의 사전 근무명령 없는 휴일근무에 대해 대체휴무를 승인 건은 총 5명 16건임(이전 근무기관의 승인 건 포함)

민속기획과	2017.02.05	2017.02.13	
민속기획과	2018.04.01	2018.04.10	
민속기획과	2018.03.31	2018.04.03	
섭외교육과	2017.05.27	2017.06.08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e-사람 시스템의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내역 재구성

또한 [표 2]와 같이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승인한 내역은 총 15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다른 정상근무일’에 총 480건(97%)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휴일근무일 1주일 이후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한 내역이 총 234건(47.2%)에 이르는 등 휴일근무자에 대해 단기간 내 휴식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체휴무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표 2] 대체휴무 사용 시기 현황

구 분	합 계	그 다음 정상근무일	다른 정상근무일			
			소 계	1주일 내	1개월 내	2개월 내
건 수	495건	15건	480건	246건	226건	8건
비 율	100%	3%	97%	49.7%	45.6%	1.6%
					234건 (47.2%)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e-사람 시스템의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현황 재구성

한편, 박물관은 기관업무의 특성 상 명절 세시풍속 행사, 휴일 행사, 전시준비 업무 등으로 휴일근무가 불가피함에 따라 휴일근무자에 대한 휴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지침」(2016. 7. 20. 제정, 2018. 5. 25. 개정, 이하 “박물관 대체휴무 지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⁵⁾

5) 가. 대체휴무의 업무요건 : 1) 휴일근무 명령 - 기관장(부서장 전결)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일 근무를 명령 : 본연의 업무를 위해 부득이한 휴일 근무로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8시간 이상 근무할 것(점심시간 제외) (예) 명절 세시풍속 행사, 휴일 강좌 및 행사 등과 전시준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잔무처리 등 근무자가 필요에 의한 휴일근무는 시간외근무만 인정) 2) 출장근무 명령 - 휴일출장은 대체휴무 불허용이 원칙, 휴일출장이 불가피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상시적 휴일 출장, 출장 시 업무내용이 평일과 동일한 업무, 이동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근무 나. 대체휴무 허가 및 사용 : 부서장은 대체휴무를 증명할 명확한 근거(행사 또는 출장과 관련한 문서 등 업무수행 확인자료)에 따라 사전허가, 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조치(기관의 업무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다만 이경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주일 이내 기간 중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 가능)

그런데 위 지침은 휴일근무 후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종료일⁶⁾’ 등 박물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속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하는 등 대체휴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체휴무일은 가급적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사용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경우에는 위의 기준⁷⁾을 마련하여 박물관 대체휴무 지침에 반영하는 등 대체휴무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공가(건강검진) 사용승인 부적정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제6호 및 복무예규 “제8장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4조 제4호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검진 또는 암검진 수검대상의 경우에 한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받은 건강검진이나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6)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전시 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종료일을 전시 개막일, 전시 폐막일 또는 다른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등

7) 예시) 특정한 전시준비를 위한 휴일근무로서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는 휴일근무는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그 밖의 휴일근무는 초과근무제도 이용), 이에 따른 대체휴무는 해당 전시 개막일로부터 1주일 내의 정상근무일로 지정하여야 함. 다만 해당 전시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일 내에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승인권자는 해당 직원의 소명을 받아(e-사람 시스템에 구체적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해당 전시 개막 후 2주일 내에 대체휴무를 지정하여야 함.(그 이후에는 초과근무제도 이용)

8) 현재 시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취업규칙」 제31조 제4호에 해당

공가대상이 아니므로9)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박물관에서 승인한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사용 내역(총 347건)을 점검한 결과, 박물관은 2018. 12. 18. 복무예규 개정으로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재검, 2차 검진)가 공가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는데도10), [표 3]과 같이 건강검진의 재검 등의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한 총 7건(7명)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였다.

[표 3]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사용 부적정 명세

소속	종별	사용기간	사용일수(시간)	공가 사유
민속기획과	공가	2019. 12. 27	1일	건강검진
	공가	2019. 01. 16	3시간	건강검진 재검
민속기획과	공가	2018. 12. 24	1일	2차 건강검진
	공가	2018. 11. 14	1일	검진
민속기획과	공가	2018. 12. 26	1일	건강검진 재검사
	공가	2018. 10. 01	1일	건강검진
유물과학과	공가	2019. 12. 23	1일	건강검진
	공가	2019. 01. 30	1일	건강검진(재검)
유물과학과	공가	2019. 08. 19	1일	건강검진
	공가	2019. 07. 19	1일	건강검진
유물과학과	공가	2019. 05. 23	1일	건강검진
	공가	2019. 03. 15	1일	건강검진 재검
전시운영과	공가	2019. 01. 11	2시간	건강검진 진료(CT결과 수령)
	공가	2019. 01. 10	4시간	정기건강검진 재검진(CT촬영)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e-사람 시스템의 공가 사용내역 재구성

다. 자녀돌봄휴가 관리 미흡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복무예규 “제8장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 휴가, (10)자녀돌봄휴가11)”에 따르면 자녀12)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초·

9)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건강검진 확진검사의 경우 공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18.12.18. 개정을 통해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재검, 2차 검사)는 공가대상에서 제외함. “개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받는 건강 검진의 경우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확진검사(2차 검진)는 공가대상이 아니며, 공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019.6.10. 인사혁신처 민원질의응답)

1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4호, 제69호, 제80호, 제83호) 제8장 휴가 4.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다. 공가 (2)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대상이 아님

11) 자녀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4.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도입(연간 2일, 16시간의 범위)되었으며, 자녀의 병원진료를 동행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3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2018.7.2.개정). 또한 2020.1.1.부터는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24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고교 등의 공식행사¹³⁾와 학부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권자는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¹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¹⁵⁾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가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박물관에서 승인한 자녀돌봄휴가 승인 내역(총 300건)을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총 171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¹⁶⁾ 더욱이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병원진료 후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10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있다.¹⁷⁾

[표 4] 자녀돌봄휴가 사용 현황

구 분		자녀 학교 방문 (졸업식, 입학식, 상담 등)			병원진료 동행 (자녀 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소 계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미첨부	소 계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미첨부
합 계	300건	272건	111건	161건	28건	18건	10건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e-사람 시스템의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용현황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앞으로 휴일근무는 별도 근무 명령을 명확히 시행할 것이고, 근무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12)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자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함

13)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등

14)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15)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16)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17)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연가는 아니며,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휴가 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 시에도 일정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므로 승인권자는 휴가 승인 시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승인요건에 맞는지 확인·관리하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증빙이 곤란한 신청 건은 연가를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초과근무로 처리하겠으며,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휴일근무일 이후 최대의 빠른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국립민속박물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지침」 개정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가나 자녀돌봄휴가 사용 시 소속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시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관련 증빙서류는 e-사람 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 ① 사전 휴일 근무명령이 없는 직원에게 대체휴무를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 공가 등 복무처리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휴일근무 후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정상근무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경우, 휴일근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사용하는 등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전이나 휴일 행사, 그 준비 기간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 종료일’ 등에 대한 기준을 「국립민속박물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지침」에 반영하는 등 대체휴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25건(약 120억 원 상당)의 계약을 경쟁입찰방식의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은 각 사업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이하 “기술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공고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조¹⁾ 및 예규 내 [별표]

1)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에 따르면 ▲ 계약담당공무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²⁾, 재공고 입찰인 경우 외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제안서 평가 시 배점한도(기술 80, 가격20)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술평가 시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고시금액 미만이거나 긴급한 행사 등 긴급입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여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들의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술평가 시 분야별 배점한도를 미공고하거나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평가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들이 임의로 변경된 평가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그런데 박물관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월 현재까지 체결한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시금액 이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나 연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긴급입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³⁾ 총 11건의 경우 짧게는 12일, 길게는 36일의 기간 동안만 공고하는 등 [표 1]과 같이 입찰공고기간(40일)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입찰 희망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

2)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017년 ~ 2018년은 2.1억 원, 2019년부터 2억 원

3)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서(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2018.04.17.) 참조

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현황(2017~2020년 4월 현재)

연번	계 약 명	계약일	공고기간 (재공고포함)	공고일자	발주금액 (천 원)
1	쓰레기 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7. 6. 21.	17일	2017.5.22. ~ 6.8.	250,000
2	상설 전시관 개편 전시연출 사업	2018-09-07	12일	2018.8.17. ~ 8.29.	850,000
3	세계의 소금 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8-03-29	35일	2018.2.13. ~ 3.7. 2018.3.7. ~ 3.20.	240,000
4	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9-04-17	14일	2019.3.26. ~ 4.9.	295,000
5	한일공동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9-07-30	15일	2019.7.1. ~ 7.16.	240,000
6	2019년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 용역	2018-12-21	29일	2018.11.12.~12.11.	279,872
7	어린이박물관 특별전 맛있는 아시아 전시연출용역	2017-10-13	24일	2017.8.25. ~ 9.6. 2017.9.7. ~ 9.19.	230,000
8	2018년 한국문화상자 제작	2018-05-29	15일	2018.4.18. ~ 5.3.	221,095
9	어린이박물관 상설전 개와 고양이와 구슬 전시 및 영상 연출용역	2018-09-28	13일	2018.8.29. ~ 9.11.	372,727
10	한국문화상자 학습자료 제작	2019-04-02	14일	2019.3.5. ~ 3.19.	201,125
11	한국문화상자 실물자료 제작	2019-05-17	28일	2019.4.11. ~ 4.23. 2019.4.23. ~ 5.9.	223,099
평균 입찰공고 기간			20일	발주액 합계	3,402,928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배점한도 변경 사유 미공고 및 평가항목 배점한도 미준수

그리고 박물관은 [표 2]와 같이 총 19건의 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다르게 분야별 배점한도(기술 80, 가격20)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기술 90, 가격10)하면서도 그 사유를 공고하지 않았다.

[표 2] 배점한도 변경 미공고 현황(2017~2020년 4월 현재)

연번	계 약 명	계약일	공고기간 (재공고포함)	배점한도	공고장소	발주금액 (천 원)
1	한일공동특별전 전시영상 제작설치용역	2019-09-09	12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99,000

연번	계 약 명	계약일	공고기간 (재공고포함)	배점한도	공고장소	발주금액 (천 원)
2	인천 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전시도록 발간 용역	2019-06-04	31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30,000
3	한국일생의례사전 다국어판	2017-06-16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75,570
4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생활편)발간	2017-10-12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120,000
5	한국농약사전다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번역	2017-08-31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145,290
6	2017한국민속학자대회위탁운영 사업 입찰 계약요청	2017-05-31	30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25,000
7	국제저널무형유산제12호영문판 국문번역	2017-09-15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20,400
8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생활편) 교열윤문(재공고)	2017-09-21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16,300
9	한국농약사전다국어판 (영문, 중문, 서문)발간	2018-05-08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77,110
10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편 발간	2018-09-07	15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136,180
11	한국민속놀이사전다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번역	2018-10-25	15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130,700
12	한국민속놀이사전다국어판 (영문, 중문, 서문)발간	2019-03-22	29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59,037
13	한국민속극사전다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번역	2019-09-05	17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137,700
14	강화의 근현대 직물산업 소창보고서 발간	2019-05-07	14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24,160
15	국수 그리고 밀면 조사보고서 발간	2019-07-04	12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22,900
16	2017년국립민속박물관영상채널위탁운영	2016-12-29	42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235,160
17	2018년국립민속박물관영상채널운영용역	2017-12-29	21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292,722
18	홈페이지 주요 자료 영문 번역 사업	2018-10-05	13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72,000
1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영문 번역 및 자막 데이터 구축	2019-11-04	12일	기술 90 가격 10	나라장터	90,000
발주액 합계						1,710,229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3]와 같이 총 8건의 계약의 경우 박물관이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배점한도(30점)를 임의로 초과하여 책정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부적정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표 3] 기술능력 평가항목 배점한도 30점 초과 계약 현황(2017~2020년 4월 현재)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공고기간 (재공고포함)	평가항목 최고 배점	공고장소	발주금액 (천 원)
1	K-museums지역순회공동기획전홍보물제작용역	2017-04-26	12일	40점 배점	나라장터	115,000
2	2017년울산민속문화의해특별전전시연출용역	2017-03-14	13일	40점 배점	나라장터	200,000
3	쓰레기 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7-06-21	18일	40점 배점	나라장터	250,000
4	박물관 사이니지 및 상설전시 그래픽 디자인 개선 사업	2017-08-01	14일	50점 배점	나라장터	40,000
5	무술년 개띠해 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7-12-05	14일	40점 배점	나라장터	45,000
6	K-museums지역순회공동기획전홍보물제작용역	2018-08-24	19일	40점 배점	나라장터	96,000
7	한일공동특별전 전시연출용역	2019-07-30	14일	40점 배점	나라장터	240,000
8	2017년울산민속문화의해 마을박물관 특별전 전시연출	2017-05-31	27일	50점 배점	나라장터	51,920
발주액 합계						1,037,920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술능력 평가 시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표 1]과 같은 박물관 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표 1] 국립민속박물관 시설물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건축개요	○ 시설규모: 연면적 19,797.81㎡ (본관 17,773.36㎡, 부속 2,024.45㎡), 건축면적 11,344.18㎡ - 층수 : 지하 1층, 지상 4층 ○ 용도지역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역 / 건축물 주용도: 전시시설(박물관) ○ 준공일: 1972. 7. 30.				
층별 현황	구분	층별	면적(㎡)	구조	용도
	계		19,798	-	-
	본관	소계	17,773	-	-
		지1층	3,568	철근콘크리트	수장고, 기계실, 전기실
		1층	9,052	철근콘크리트	박물관(전시실, 강당, 방재센터 등)
		1층중층	1,257	철근콘크리트	전시실, 수장고 등
		1층	56	철근콘크리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43	철근콘크리트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층	2,050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층	315	철근콘크리트	수장고, 공조실
		2층	136	철근콘크리트	문화 및 집회시설(사무실)
3층		1,165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자료실	
옥탑층	132	철근콘크리트	수장고, 창고		

구 분	주 요 내 용			
부속건물	소계	2,024	-	-
	1층	655	철골조립식	사무실, 교육장(별들재)
	1층	265	철근콘크리트구조	교육장(전통문화배움터)
	1층	180	철골조립식	구내식당
	1층	8	철근콘크리트구조	청원경찰실
	1층	718	철골조립식	보존처리실
	1층	29	철골조	정문안내소
	1층	43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방호원실
	1층	60	철근콘크리트구조	미화원대기실
	2층	66	철근콘크리트구조	미화원대기실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미신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운영 부적정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가설건축물¹⁾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관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거 설치된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통해 박물관 내 건축물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민속자료 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박물관 외부에 설치된 [표 2]의 컨테이너 총 17개동(연면적 360㎡, 점유면적 207㎡)의 건축신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박물관은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도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됨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미신고 가설건축물 현황

연번	사용부서명	설치연도	규격	수량	활용목적	물품대장 등재 여부
1	유물과학과	2016년	3m×9m	1개	자료 보관	유물과학과 등재 (2016.12.26.)
2	유물과학과	2016년	3m×9m	1개	민속 자료	등재 (2016.12.26.)
3	카페느루	2018년	3m×6m	1개	카페 물품 보관	해당없음(민간)
4	민속연구과	2016년	3m×6m	1개	자료 보관	등재 (2016.12.26.)
5	전시운영과	2010년	3m×12m	1개	전시자료 보관	유물과학과 등재 (2010. 8. 5.)
6	전시운영과	2011년 추정	3m×12m	1개	전시자료 보관	미등재
7	민속박물관회	2007년	3m×6m	1개	박물관 발간자료 보관	해당없음(민간)
8	뮤지업습	2011년	3m×6m	1개	국립문화재단 물품보관	해당없음(민간)
9	섭외교육과	2016년	3m×5m	1개	교육기자재 보관	등재 (2016.12.19.)
10	섭외교육과	2015년	3m×6m	1개	교육기자재 보관	미등재
11	민속기획과	2016년	3m×6m	1개	미화 및 조경 용품 보관	등재 (2016.12.20.)
12	민속기획과	2008년	3m×9m	1개	미화 관리 장비 보관	전시운영과 등재 (2008.2.29.)
13	섭외교육과	2013년	3m×6m	1개	교육 기자재 보관고	등재 (2013.2.28.)
14	민속기획과	2003년 추정	3m×3m	1개	미화 용품 보관	미등재
15	어린이박물관과	2010년 추정	3m×6m	1개	교육기자재 보관	미등재
16	어린이박물관과	2018년	3m×9m	1개	다문화상품 등 보관	등재 (2018.10.4.)
17	민속기획과	2016년	3m×4m	1개	미화 및 조경 용품 보관	등재 (2016.12.26.)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물품을 취득한 경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박물관은 컨테이너 17개동 중 4개동은 2020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었다.

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부적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8조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박물관 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박물관은 [표 3]과 같이 주출입구 점자블록, 계단실 점자표지 부착물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표 3] 장애인등 편의시설 미설치 명세

구 분	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 미부착	주출입구 점자블록 미설치
본관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고,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발견된 하자사항을 계약업체에 보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의 하자보수관리부 및 하자검사 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3년차로 설정된 공사²⁾에 대해서 박물관은 [별표]와 같이 총 8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가설건축물 축소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해 철거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경우 미비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자검사 누락 없이 철저히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① 국립민속박물관 내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가설건축물 설치·운영,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운영, 정기 하자검사 실시 등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건축법」 상 미신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 또는 철거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하자담보책임기간 1~2년차 대상공사 현황) ①실내의장(1년), ②토공(2년), ③미장·타일(1년), ④도장(1년), ⑤석공사·조적(2년), ⑥창호설치(1년), ⑦판금(1년), ⑧철물(2년), ⑨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2년), ⑩보일러 설치(1년), ⑪ 건물내 설비(1년), ⑫아스팔트 포장(2년)

[별표]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명세(2017~2019년)

계약명	계약일	납품일	검수일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금액	담당부서	하자검사 부적정 명세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공사(전기설비)	2017. 9. 6.	2017. 12. 4.	2017. 12. 15.	2017.12.5.~2018.12.4.(1년)	23,398,010	유물과학과	'18년 연 2회 미실시 (검사일: 2018. 7. 3.~4.)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공사(소방설비)	2017. 9. 1.	2017. 12. 4.	2017. 12. 18.	2017.12.4.~2020.12.3.(3년)	29,024,780	"	'18년~'19년 연 2회 미실시 (검사일: 2018. 7. 3.~4. / 2019. 1. 21.~22.)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공사(정보통신설비)	2017. 9. 4.	2017. 12. 4.	2017. 12. 19.	2017.12.5.~2018.12.4.(1년)	29,337,000	"	'18년 연 2회 미실시 (검사일: 2018. 7. 3.~4.)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정리실 증축공사(건축/기계)	2017. 9. 1.	2017. 12. 4.	2017. 12. 15.	2017.12.5.~2020.12.4.(3년)	145,410,000	"	'18년~'19년 연 2회 미실시 (검사일: 2018. 7. 3.~4. / 2019. 1. 21.~22.)
국립민속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공사	2017. 10. 27.	2017. 11. 28.	2017. 11. 28.	2017.11.28.~2019.11.27.(2년)	72,468,800	민속기획과	'18년 연 2회 미실시, '19년 미실시 (검사일: 2018. 10. 19.)
상설3전시관 조명개선 전기공사	2017. 12. 20	2018. 1. 31.	2018. 4. 23.	2018. 1.31.~2019. 1.30(1년)	65,189,800	전시운영과	하자검사 미실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실내환경 개선공사	2018. 5.31.	2018. 8.29.	2018. 9. 3	2018. 8.30.~2020. 8. 29.(2년)	56,014,800	유물과학과	하자검사 미실시
국립민속박물관 상설2전시관 조명개선 전기공사	2018. 10. 1	2018. 10. 30	2018. 11. 12	2018.10.30.-2019.10.29.(1년)	31,523,580	전시운영과	하자검사 미실시
계	총 8건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제 목	수장고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필요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전시·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 총 110대를 [별표 1]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이하 “소장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르면 박물관 직원이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1)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이며,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관은 해당부서장, 분임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임(소장품관리규정 제29조)

언어야 하며 수장고 관리일지(「소장품 관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에 수장고 출입사유·출입자 성명·일자·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르면 CCTV는 전시·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소장품 관리규정과 별도로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전체에 대한 CCTV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박물관에 설치·운영 중인 CCTV 현황을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 점검한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은 [별표 2]와 같이 모든 수장고 내부에 고화질의 회전형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도, 박물관은 [별표 1]와 같이 수장고 입구에만 총 1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수장고 내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수장고 출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수장고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등에 관한 상황은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수장고 입구 등에는 CCTV 18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장고 내 CCTV가 설계되어 있는 과주 개방형수장고가 2020년 준공되면 연내에 다수의 소장품을 이전할 계획이며, 경복궁 복원계획에 따른 철거 및 이전계획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본관 수장고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소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본관 수장고 내부의 소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세부 설치현황

구역	장소	수량	구분	비고
지하(5)	지하	2	회전형 2대	
	수장고 복도	3	회전형 3대	
1층(50)	E/V	2	고정형 2대	
	강당	2	고정형 2대	
	현관로비	4	고정형 3대 회전형 1대	
	복도	6	고정형 1대 회전형 5대	
	1전시관	9	고정형 4대 회전형 5대	
	2전시관	11	고정형 2대 회전형 9대	
	3전시관	12	고정형 2대 회전형 10대	
	기획1	3	회전형 3대	
	기획2	1	회전형 1대	
2층				
3층(3)	3층	2	고정형 2대	
	아카이브	1	회전형 1대	
팔상전(2)	옥외	2	회전형 2대	
각황전(5)	1층	1	회전형 1대	
	2층	1	회전형 1대	
	옥외	3	고정형 2대 회전형 1대	
미륵전(2)	1층	1	회전형 1대	
	옥외	1	회전형 1대	
신축수장고(3)	1층	1	회전형 1대	
	2층	1	회전형 1대	
	3층	1	회전형 1대	
어린이 전시관(8)	1층	4	고정형 1대 회전형 3대	
	2층	4	고정형 2대 회전형 2대	
별들재(3)	현관 및 교육장	3	고정형 2대 회전형 1대	
보존실(2)	현관 및 복도	2	고정형 2대	
옥외(27)	정문 및 옥외전시	27	고정형 10대 회전형 17대	
총계		110대	고정35대 회전형75 대	

* 총 110대 중 수장고 관련 CCTV 18대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세부 설치현황

위치	수량(대)	형식	화소수	설치 년도	비 고
1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2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3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4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5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6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7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8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9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0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1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2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3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4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5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6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6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7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8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19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20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21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순응실	1	고정형	200만	2015.6.10	
전시과 금고	1	회전형	200만	2015.6.10	
합 계 (수장고)	23				
21금고 하역장	1	회전형	200만	2015.6.10	
수장고 복도	1	회전형	200만	2015.6.10	
수장고 복도	1	고정형	200만	2015.6.10	
수장고 감시실	1	고정형	200만	2015.6.10	
3호기 홀 앞	1	회전형	200만	2015.6.10	
4호기 홀 앞	1	회전형	200만	2015.6.10	
하역장	1	회전형	200만	2015.6.10	
수장고 변전실	1	회전형	200만	2015.6.10	
합 계 (수장고 관련)	8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정보화 사업 소요예산 산출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누리집”,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별표]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구축(개선)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9조에 따르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대가산정 가이드”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내역서에는 산출근거로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출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박물관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개발범위(기능목록)를 정확히 도출하여 개발규모(기능점수¹⁾)를 산정하고, 삭제된 기능, 활용저조 등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은 운영·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기능 개발원가 산정 부적정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시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사전준비 단계)하고,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단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은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기능수 23개²⁾로 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하였고, “발간자료 웹서비스 확장 및 기능 개선”³⁾(2019년) 사업에 대해서는 2~5개의 기능⁴⁾을 하나의 기능 요구사항으로 정의하는 등 개발 범위를 구체

1)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는 사용자 관점에서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양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이고, 기능점수 방식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측정방법

2) 외부입력 6개, 외부출력 6개, 외부조회 6개, 내부논리 3개, 외부연계 2개

3)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결과 권고사항(소요예산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에서 하나의 기능에 대해 2~5개의 개발 내용을 구체화 필요)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

4)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대해 국어사전 추가 내부논리 2개, 다국어사전 추가 내부논리 3개, UI/UX 개선 외부조회 3개, 국제저널무형유산에 대해서는 페이지 콘텐츠 디자인 개선 외부조회 2개, 검색기능 개선 트랜잭션 기능 2개(입력 2개), 외부출력 5개, 관리자 기능 개선 트랜잭션 기능 10개(입력 4개, 수정 3개, 삭제 3개), 외부출력 3개

화하지 않고 기능점수를 산정하여 발주금액을 산출⁵⁾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 추가 개발”, “2019년 다문화꾸러미(태국) 홈페이지 제작⁶⁾” 등 2건의 사업의 기능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또는 기능점수 등을 통한 산출 근거 없이 개발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어린이박물관 영문홈페이지 제작”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건에 대해서는 발주금액을 산출하면서 기능수, 상세 기능목록, 기능점수 산정과정⁷⁾이 누락된 기능점수로 [표 1]과 같이 개발원가를 산출하였다.

[표 1]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관련 사업 개발원가 산출현황

(단위: 원)

사업명	추진 연도	기능수	기능점수	개발원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 추가 개발	2017	-	-	6,500,000
어린이박물관 영문홈페이지 제작	2018	-	24	12,910,105
2019년 다문화꾸러미(태국) 홈페이지 제작	2019	-	-	18,009,496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19	-	19.9	10,139,422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0	-	19.9	10,139,422

자료: 산출내역서 자료 재구성

나. 보정계수값 계산 부정적

대가산정 가이드(2018. 6. 이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은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언어에 따른 보정계수⁷⁾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정계수값은 해당 언어 보정계수에 비중을 곱하여 산출⁸⁾하

5)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결과 소요예산의 적합성 부분에서 기능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정보화담당관-952(2019. 1. 31.,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사전협의 검토 결과 통보))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발주

6)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결과 소요예산의 적합성 부분에서 소요예산 산출근거 개발 대상 기능목록, 기술자 등급(투입공수 포함)을 보완하도록 권고(정보화담당관-3629(2019. 5. 20., 2019년 다문화꾸러미 태국꾸러미 홈페이지 제작 사업 사전협의 검토 결과 통보))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발주

7) 2018. 6. 기능점수방식의 보정계수 산정체계 개정에 따라 기존 규모, 어플리케이션 유형, 개발언어, 품질 및 특성의 4가지 보정계수에서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요구수준, 다중사이트 운영성, 보안성의 5가지 보정계수로 개정

8) 언어 보정계수값=Σ[(언어별 애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전체 사업 규모)×해당 애플리케이션 언어 보정계수]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2018년 다문화꾸러미 인도꾸러미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표 2]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 2] 박물관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위: 원)

공정	기능점수	FP단가		규모보정	APP보정	품질	금 액
		단계별	언어				
분석	68	98,648	0	0.65	1.100	1.050	5,036,079
설계		124,069	0				6,333,847
구현		166,145	1				8,481,868
시험		129,801	1				6,626,471
합계							26,478,265

자료: 산출내역서 자료 재구성

그런데 “2018년 다문화꾸러미 인도꾸러미 홈페이지 제작”의 사업계획서 ‘Ⅶ. 소요예산 나. S/W 개발비 산정 ○ 언어 보정계수(c)’에서 보정계수가 1.2인 언어(C, JAVA 등)의 적용비율이 0.40이고 보정계수가 0.8인 언어(HTML, JSP, SQL 등)의 적용비율이 0.60으로 되어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보정계수값은 $0.96(1.2 \times 0.4 + 0.8 \times 0.6)$ 이다.

또한 ‘○ 유형’ 보정 계수(d)에서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해 적용비율 없이 업무처리용만 선택하였으므로 1.0인데 1.100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위 정확한 값을 적용해 계산하면 [표 3]와 같이 23,546,817원으로 [표 2]의 26,478,265원과 2,931,448원 차이가 있다.

[표 3]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개발비 재산정 결과

공정	기능점수	FP단가		규모보정	APP보정	품질	금액(원)
		단계별	언어				
분석	68	98,648	-	0.65	1	1.050	4,578,254
설계		124,609⁹⁾	-				5,783,104
구현		166,145	0.96				7,402,358
시험		129,801	0.96				5,783,102
합계							23,546,817

다. 재개발비 산정 미흡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를 계산하고, 여기에 신규개발에 해당하는 신규개발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합한 총 재개발 규모를 기준으로 재개발 원가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박물관은 2017년에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 및 시스템 통합 사업”,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능목록, 기능별 변경률¹⁰⁾(설계, 코드, 통합 및 시험 등) 등에 대한 상세 내역 없이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하여 [표 4]와 같이 개발 원가를 산출하였다.

[표 4] 재개발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명	기능수	수정대상 소프트웨어 규모(FP)	총변경률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FP)	개발원가(원)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 및 시스템 통합 사업	166	809.3	32.8485	313.729	198,790,516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 사업	23	111.9	32.8485	43.406	18,766,509

자료: 산출내역서 자료 재구성

9) 대가산정가이드 설계단계 FP단가는 124,609원으로 산출내역서 124,069원은 오기임

10) 설계 변경률은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설계 노력이 필요한지를, 코드 변경률은 물리적으로 소스코드를 어느 정도 수정해야하는지를, 통합 및 시험 변경률은 재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 및 시험에 소요되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냄

라. 효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부적정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효율제 유지관리비 산정은 대상 소프트웨어가 유지관리 되어온 기간 동안 기능의 추가, 변경, 삭제 등으로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규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비¹¹⁾는 유지관리 계약시점(현재)을 기준으로 기능점수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물관은 “2017년도 국립민속박물관 개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의 소요예산을 산출하면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현재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개발비를 현재가치로 계산하였고, 난이도(자료처리 건수, 타시스템 연계 점수 등)를 시스템별로 산정하지 않고 대상시스템 전체로 하여 타시스템 연계를 7개로 하는 등 [표 5]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 5] 대상시스템 개발비 현황

시스템명	개발비(천 원)	난이도 산정		비고
		타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횟수	
메인 홈페이지	98,000	7개 (10점)	12회 초과 (35점)	2018년도 ¹³⁾ 에는 타시스템 연계 1~2개(5점)으로 산정
모바일 홈페이지	19,000			
표준유물관리시스템	143,347 ¹²⁾			
민속자료 통합관리시스템	100,000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민속아카이브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표 6]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민속아카이브시스템에 대한 재개발 및 기능 개선 사업 등의 발주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122,000천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11)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 당시 기준이 아닌 유지관리 계약시점의 현재가치(현재 시점으로 재산정된 기능점수 × 현재 시점 FP단가 × 보정 계수 + 이윤)로 재산정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12) 산출내역서의 대상시스템 개발비 내역에서 개발비 보정 후 단가로 되어 있으나 산정근거 미첨부

13)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은 “2018년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표 6] 민속아카이브시스템 구축¹⁴⁾ 및 개선 사업 추진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추진연도	발주금액	계약금액	비고
민속 아카이브 시스템 재개발	2015	50,000	47,300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추가 기능 개발	2016	50,000	48,200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	2017	22,000	21,500	
합 계		122,000	117,000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유해생물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및 “2019년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현재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표 7]과 같이 부가가치세¹⁵⁾를 제외하지 않은 구축비(계약금액)를 현재 가치로 하여 산출하였다.

[표 7] 유비보수 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구축비(계약금액)	구축연도	비고
유해생물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47,300	2012	
2019년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0,300	2017	

자료: 산출내역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상세 기능목록, 변경률 등 산출내역¹⁶⁾을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소요예산 산정에 있어서 부주의로 인한 오류를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4)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용역(2008년) 69,542천 원, 민속아카이브시스템 확장 및 개선(2010년) 39,200천 원

15) 구축 당시 기능이 현재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기능점수에 의한 현재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으면 해당 정보시스템의 현재가치는 구축비(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박물관은 예산 산정에 필요한 총괄 기능점수 등만 표기하고 상세 기능목록, 변경률 등에 대한 산출내역은 누락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상세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SW 대가 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개발규모를 측정하여 개발 원가를 산정하고, 미활용 기능 등 불필요한 기능은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단위: 원)

연번	사업명	발주금액(원)	계약금액(원)	사업비 산정방법	사업기간	비고
1	2017년도 국립민속박물관 개발소프트웨어 ¹⁷⁾ 유지 보수	49,000,000	47,850,000	요일제	2017.01.01.~ 2017.12.31.	
2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 및 시스템 통합 사업	240,000,000	216,000,000	기능점수	2017.04.19.~ 2017.12.15.	
3	민속아카이브 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 사업	22,000,000	21,560,000	기능점수	2017.11.14.~ 2017.12.28.	
4	보존처리카드 관리시스템 솔루션 개발	83,500,000	80,300,000	기능점수	2017.03.30.~ 2017.11.25.	
5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 추가 개발	16,100,000	16,100,000	투입공수	2017.01.01~201 7.12.31	개발부분에 대한 사업 비 산정방법 없음
6	어린이박물관 웹사이트 통합 및 콘텐츠 개선	160,000,000	147,580,000	기능점수	2017.07.21.~20 18.01.17.	
7	민속현장조사 웹서비스 개편	71,500,000	68,200,000	기능점수	2017.07.11.~20 18.01.07.	
8	2018년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5,000,000	15,000,000	요일제	2018.1.01.~ 2018.12.31.	
9	웹서비스 다국어 기반 구축	72,000,000	70,500,000	기능점수	2018.10.05.~ 2018.12.15.	
10	민속아카이브시스템 유지관리	21,900,000	19,800,000	요일제	2018.08.13.~ 2018.12.31.	
11	다문화꾸러미 인도꾸러미 홈페이지 제작	30,400,000	29,040,000	기능점수	2018.10.01.~20 18.12.18.	
12	어린이박물관 영문홈페이지 제작	19,250,000	17,900,000	기능점수, 투 입공수	2018.11.23.~20 18.12.07.	
13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40,000,000	39,200,000	기능점수	2018.07.19.~20 18.10.17.	

연번	사업명	발주금액(원)	계약금액(원)	사업비 산정방법	사업기간	비고
14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40,000,000	39,200,000	기능점수	2018.07.19.~2018.10.17.	
15	국립민속박물관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62,000,000	60,500,000	투입공수	2019.05.30.~2019.12.31	
16	2019년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0,000,000	10,000,000	요율제	2019.01.01.~2019.12.31	
1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시스템 기능 개선	42,600,000	40,500,000	기능점수	2019.11.06.~2020.01.19.	
18	유해생물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6,600,000	6,600,000	요율제, 투입공수	2019.01.01.~2019.12.31.	
19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90,200,000	88,000,000	기능점수	2019.04.29.~2019.11.29.	
20	2020년 국립민속박물관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62,000,000	60,000,000	투입공수	2020.01.01.~2020.12.31.	
21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실 프로그램 통합유지관리 용역	21,900,000	21,461,000	투입공수	2020.03.31.~2020.12.31	
22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2,970	18,800,000	기능점수, 투입공수	2019.1.31.~2019.12.31.	
23	2019년 다문화꾸러미(태국) 홈페이지 제작	30,000,000	29,095,000	기능점수, 투입공수	2019.08.08~2019.11.05.	
24	한국문화상자 홈페이지 제작	90,000,000	83,600,000	기능점수, 투입공수	2019.09.06.~2019.12.13.	
25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2,970	18,800,000	기능점수, 투입공수	2020.01.01.~2020.12.31.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17) 누리집(98,000천 원), 모바일 누리집(19,000천 원), 표준유물관리시스템(143,347천 원, 개발 보정 후 단가), 민속자료 통합관리시스템(100,000천 원)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제 목 민속아카이브 자료 공개 및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민속·생활문화·민속학·인류학·박물관학 등 박물관과 관련이 있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내외 아카이브자료를 [표 1]과 같이 수집·등록하여 연구·전시·교육·복제 및 열람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민속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대국민 서비스하기 위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¹⁾를 조직화하기 위해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2008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민속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등록 현황(2020. 4. 현재)

(단위: 점)

구분	사진	음원	영상	문서등 기타 자료	합계
수집	959,594	7,235	11,146	14,624	992,599
등록	650,751	2,978	3,714	1,169	658,612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속성정보)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민속아카이브 자료 공개 노력 미흡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운영규정」 제5조(아카이브자료 수집)에 따르면 박물관의 전시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²⁾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이하 “아카이브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민속아카이브 자료 중 웹서비스 공개로 설정된 자료는 “대표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웹서비스 비공개 민속아카이브 자료에 대해서는 박물관을 방문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료, 연구자료, 전시, 출판, 홈페이지 게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 자료에 관한 복제(이용) 신청이 [표 2]와 같이 접수되고 있다.

[표 2] 민속아카이브 자료 자료복제(이용) 신청 접수 현황(2020. 4. 현재)

(단위: 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사진	688	1,276	230	26	2,220
음원	4	3	-	-	7
영상	9	13	26	9	57
문서등 기타 자료	1	-	-	-	1
합계	702	1,292	256	35	2,285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박물관은 민속아카이브 자료의 수집목적 달성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2)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아카이브자료”는 국내외 생활문화 등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업무 및 직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박물관은 공공누리³⁾의 제1유형 자료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사진 110,097점, 음원 148점 등 110,450점을 웹서비스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대용량 파일 구동 서비스 어려움⁴⁾ 등의 이유로 이미지 자료를 제외한 음원, 영상, 문서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표 3]과 같이 웹서비스 공개여부 검토를 완료한 자료 346,299점 중 68%인 235,849점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웹서비스 비공개 민속아카이브 자료에 대해서는 누리집에서 실물자료(이미지, 음원, 동영상 등)는 서비스하지 않더라도 기초 정보⁵⁾에 대해서는 검색결과에 표출할 필요가 있다.

[표 3] 민속아카이브 자료(등록) 공개 지정 현황(2020. 4. 현재)

(단위: 점)

구분	검토완료			검토중	합계
	공개	비공개	소계		
사진	110,097	232	110,329	308,045	650,751
음원	148	476	624	2,354	2,978
영상	71	2,063	2,134	1,580	3,714
문서등 기타 자료	134	701	835	334	1,169
합계	110,450	235,849	346,299	312,313⁶⁾	658,612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제1유형 출처표시

4) 동영상 자료의 경우 최대 64.8GB, 평균 420.6MB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에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5) 아카이브 상세정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명칭, 용도기능, 사업명, 상세설명 등의 정보

6) 기증자료(MM 자료 등) 17만여 점에 대해 2년여 간의 정리 작업 후 2019. 12. 31.에 등록

나. 누리집에서의 민속아카이브 자료 공개 오류

박물관은 사이트 통합을 통한 생활민속자료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민속아카이브 사이트”를 “홈페이지 재구축 및 시스템 통합 사업”⁷⁾(2017년)을 통해 누리집의 자료마당에 통합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리고 아카이브 시스템, 누리집을 포함한 박물관 정보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표 4]와 같이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정보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유지관리 대상	제안요청사항 (운영관리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정보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2019.05.30.~ 2019.12.31.	- 대표누리집(통합관리시스템 포함) - 영상채널 서비스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 도서자료관리시스템(KOLAS)	업무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기능보강
2020년 국립민속박물관 정보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2020.01.01.~ 2020.12.31.	- 대표누리집(통합관리시스템 포함) - 영상채널 서비스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 민속아카이브시스템	업무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기능보강

자료: 제안요청서 내용 재구성

따라서 박물관은 누리집에 대한 서비스 오류, 성능 이상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발생하면 위 사업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여야 했다.

그런데 박물관은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된 민속아카이브 자료를 연계하는 누리집의 기능 오류로 [표 5]와 같이 웹서비스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공개 되어야 할 이미지 자료 110,097점 중 누리집의 검색 결과에는 74,768점만 표출되고 35,329점은 누락되고 있었다.

7) 2017. 4. 19.~12. 15., 240,000천 원, ㈜○○

[표 5] 민속아카이브 자료 공개 현황(2020. 4. 현재)

(단위: 점)

구분	웹서비스 공개설정 자료 (a)	누리집 공개 자료 (b)	비노출 웹서비스 공개설정 자료 (a-b)
이미지	110,097	74,768	35,329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민속아카이브 자료검색의 상세검색에서 검색범위를 전체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74,768점이 검색되지만, 자료유형(사진, 영상 등) 입력이 필수 사항인데도 'NULL'값⁸⁾이 입력되는 오류⁹⁾로 사진, 영상 등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검색하면 [표 6]과 같이 74,767점이 검색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표 6] 검색범위별 검색결과(2020. 4. 현재)

(단위: 점)

검색범위	전체	개별			
		사진	영상	기타	합계
검색결과	74,768	74,764	1 ¹⁰⁾	2 ¹¹⁾	74,767

자료: 누리집 검색 결과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 아카이브 자료 검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로의 확대는 기반시스템을 확충 후 추진하겠으며, 공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자료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카이브 시스템과 누리집의 자료 연계 상태, 서비스 오류, 성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8) NULL값은 아직 결정되지 않거나, 모르는 값을 의미

9) 데이터베이스에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 작업을 하면서 필수값 입력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발생(사진자료 '△△' 2015년 등록)

10) 경상과 서안 제작방법 3D

11) 성공적인 동진농업 간척지를 가보다-군산일보 1930년 11월 13일, 성공적인 동진농업 간척지를 가보다-군산일보 1930년 11월 12일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아카이브자료 수집 목적 달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비공개 자료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표 누리집”과의 자료 연계 상태, 서비스 오류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외국어 누리집 관리 소홀

소 관 실 국 지역문화정책관

관 계 기 관 국립민속박물관

내 용

1. 업무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 체계 구축 및 민속 문화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국문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편찬하고 있으며,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을 구축¹⁾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은 2008년 구축하였으며, 영어 누리집은 2010년, 중국어 및 스페인어 누리집은 2016년 구축하였음

따라서 박물관은 사업 완료에 따른 검사(검수)를 하면서 계약서상의 과업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여 오류 등을 내재한 채 서비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 중에는 서비스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오류 발생 시 유지보수를 요청(무상유지보수 기간)하거나 관리·운영 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박물관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서비스 및 모바일 앱 확장 사업”(2014. 3. 14.~2014. 7. 11., 109,406,290원²⁾, (주)○○○)을 통해 영문 누리집에 동영상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사업 완료 시 오류 발생여부 등에 대한 검사(검수)와 운영 중 서비스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국문 누리집에서는 151건 중 31건의 동영상 콘텐츠 제목이 영어로 표기³⁾되고 있었고,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누리집에서는 동영상 83개 중 52개가 한글로 표시되고 있는데도, 2020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제목을 영어로 번역⁴⁾하는 등의 보완 없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표 1] 제목 표시 언어별 동영상콘텐츠 현황

구분	한글제목	영어제목	합계	감사 지적 후 조치
국문사이트	120	31	151	31개 영어제목 콘텐츠 서비스에서 제외
영문사이트	52	31	83	52개 한글제목 콘텐츠 서비스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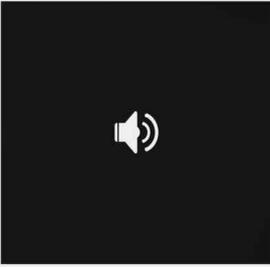
2)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서비스 확장 59,550,000원, 모바일 앱 확장 개발 49,856,290원

3)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을 하였으나 자료를 읽어오는 프로그램에서 언어 체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오류 발생

4) 한국세시풍속사전 영문판은 2010년, 한국민속신앙사전 영문판은 2013년에 발간되어 한글제목 콘텐츠 52건 중 23건은 번역이 되어 있었으나 2014년 관련 사업 및 운영 중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또한 박물관은 2016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서비스 확장” 사업(2016. 8. 16 ~2016. 12. 9, 136, 400천 원, (주)ΘΘ)에 대한 검사(검수) 및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여 ‘Vivid korean folklore’ 메뉴에서 [표 2]와 같이 사진자료의 견본 이미지 (Thumbnail)를 통해 접근하면 정상적으로 관련 이미지 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제목을 통해 접근할 경우 사진자료인데도 동영상 자료 출력화면이 표출되고 있으며, Headword의 하위 메뉴인 Directory의 Korean Rites of Passage(Category Lv1)에는 중분류(Category Lv2)가 없는데도 중분류에 ‘일생의례’가 표시되는 등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2020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

[표 2] 사진 자료 접근 경로별 표시 화면 비교

견본 이미지 클릭 후 화면	제목 클릭 후 화면																				
<p>Kitchen God</p> <p>All > 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 > Kitchen God(2)</p>  <table border="1" data-bbox="504 1267 748 1458"> <tr><td>Image name</td><td>Kitchen God</td></tr> <tr><td>Date of survey</td><td>1995-08-25</td></tr> <tr><td>Surveyer</td><td>국립민속박물관</td></tr> <tr><td>Surveyed area</td><td>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추성마을</td></tr> <tr><td>Headword</td><td>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td></tr> </table> 	Image name	Kitchen God	Date of survey	1995-08-25	Surveyer	국립민속박물관	Surveyed area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추성마을	Headword	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	<p>Kitchen God</p> <p>All > 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 > Kitchen God(0)</p>  <table border="1" data-bbox="1126 1274 1377 1489"> <tr><td>Video clip title</td><td>Kitchen God</td></tr> <tr><td>Date of survey</td><td>1995-08-25</td></tr> <tr><td>Surveyer</td><td>국립민속박물관</td></tr> <tr><td>Surveyed area</td><td>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추성마을</td></tr> <tr><td>Headword</td><td>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td></tr> </table>	Video clip title	Kitchen God	Date of survey	1995-08-25	Surveyer	국립민속박물관	Surveyed area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추성마을	Headword	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
Image name	Kitchen God																				
Date of survey	1995-08-25																				
Surveyer	국립민속박물관																				
Surveyed area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추성마을																				
Headword	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																				
Video clip title	Kitchen God																				
Date of survey	1995-08-25																				
Surveyer	국립민속박물관																				
Surveyed area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추성마을																				
Headword	Korean Folk Beliefs > Kitchen God																				

자료: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 화면 재구성

한편, 박물관은 [표 3]과 같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사전 추가 등을 포함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서비스 오류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보완함으로써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표 3]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관련 사업 추진현황

추진연도	사업명	사업 내용
2018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전 추가 업데이트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기능개선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2019	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개선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전 추가 업데이트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기능개선

자료: 제안요청서 내용 재구성

그런데 박물관은 운영 중인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의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위에서 지적한 사항 등과 같은 오류 등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의 다국어 누리집을 통해 우리 생활민속 문화를 해외에 알리겠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우리나라 민속생활관련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은 향후 오류 발생이 없도록 면밀한 검사(검수)를 수행하겠으며, 기능오류는 보완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우리 생활민속 문화를 해외에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외국어 누리집 포함)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 오류에 대해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 문제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의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보(모범사례)

제 목	에너지저장장치를 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하여 예산 절감 및 화재안전성 확보 등에 기여
소 관 부 서	국립민속박물관
조 치 부 서	국립민속박물관
모 범 대 상 자	국립민속박물관과 민속기획과 공업서기 KK
모 범 내 용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과밀한 수장환경과 지속적인 유물 수집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과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이하 “개방형수장고”라 한다) 건립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18. 7. 20. 착공하였고, 2020년 6월경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1조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라 한다)¹⁾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8월경 전북 ㉸㉸군의 풍력발전 연계용 ESS 화재를 시작으로 원인 모를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

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됨

업부”라 한다)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²⁾”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ESS 화재사고는 배터리 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통합관리 체계 부재 등이 원인으로 조사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 민속기획과 주무관 KK(개방형수장고 전기공사를 2019. 1. 22.부터 담당)는 2019년 2~4월경 ESS를 설치할 경우 개방형수장고가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2019. 5. 31. “전기저장장치(ESS)의 안전성 향상기술 및 확보방안” 컨퍼런스(한국전기기술인협회 주최)에서 사고원인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참관하면서, 토론자로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당초 설계된 지열에너지 외에 신규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계약전력의 5%(100kw) 이상 설치할 경우 전력피크대응 건물³⁾에 해당되어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⁴⁾는 사실을 직접 확인⁵⁾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태양광발전설비, 당초 신재생에너지(지열에너지) 및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등의 설계내용을 검토한 후, 산업부에 위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ESS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청(민속기획과-5379, 2019. 11. 1.)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에 적극 대응함⁶⁾으로써, ‘전력피크대응 건물로

2) (조사위 구성현황)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소방전문기관, 정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

3) (전력피크대응 건물) 신재생에너지설비,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심야전력기기, 부하 관리 및 감축 설비, 기타 피크저감으로 활용되는 시설 등이 건물 내 설치되어, 이를 통해 계약전력의 5% 이상의 피크전력을 저감할 수 있는 건물이 해당됨.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이드라인 (2016.12.)’]

4) (ESS 의무설치 제외 대상)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펌프장, 공항, 철도·지하철 시설,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단서)

5) KK 주무관은 직접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JJ 위원장(=대학교 교수)에게 ESS 사고원인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질의하여 법상 의무사항인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 이외 추가적으로 ESS로 충당하여야 하는 전력량을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시설⁷⁾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⁸⁾

그 결과 ESS를 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 설치함⁹⁾으로써, 설치비용 절감(△약 112,372천 원)¹⁰⁾, 운영 전기요금 약 3배 이상 절감(절감 추정치 비교내용 별표 2 참조),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ESS 설치공간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인한 환경보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에너지저장장치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로 대체하여 설치비 예산 절감 및 화재안전성 확보 등의 성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주무관(공업 8급) KK에게는 표창,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6) 한국에너지공단(산업부 업무 위임) 검토협의 시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설치예정인 지열에너지의 법적 공급의무 비율이 개방형수장고 준공연도인 2020년 기준(30%)으로 적용하여 추가 설치예정인 태양광발전장치(5%)를 합하여 3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무관 KK는 국민신문고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 제시하여 지열에너지의 경우 법적 공급의무 비율이 개방형수장고 설계연도인 2017년 기준(21%)으로 적용하여 추가 태양광발전장치(5%)를 합하여 26% 이상이면 충족되는 것으로 주장하여 산업부가 인정하도록 하였음.

7) (산업부 인정 범위) ESS 설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자부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됨.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이드라인]

8)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제외 신청사항 검토결과 알림(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2719, 2019.12.6.) : 검토결과 설치의무 제외 - 계약전력의 5%이상의 피크전력을 저감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예정으로 이를 통해 피크전력 저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9)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계획 변경보고(민속기획과-444, 2020.1.28.)

10) (절감비용 산출내역) 당초 ESS 설치비 362,252,000원→ 변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49,879,500원(도급분 약 2천만 원 포함)

[별표 1]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발전설비 비교

구 분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00KW(배터리: 200KW)	100.8KW
변환방식 (계통도)	한전 공급전기→ 충전 및 제어(PCS, 배터리, BMS)→ 방전(사용)	전기 생산(태양빛)→ 접속반→ 인버터→ 공급(사용)
기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S(전력변환장치): 교류→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직류→교류로 변환하여 전력 계통에 공급하는 장치 ○ 배터리: 전기 저장장치 ○ BMS(배터리제어시스템): 배터리의 전압·전류·온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충·방전을 제어하는 장치 ○ PMS(전력관리장치): PCS 또는 배터리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 전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전지판(모듈): 종 및 횡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형태로 태양빛이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모듈 ○ 접속함: 역류방지 다이오드, 직류용 퓨즈 및 개폐기, 서지보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력을 하나의 직류전력으로 통합하여 인버터로 송출하는 기기 ○ 인버터: 직류→교류 변환 장치
운영 방식	○ 전력량 요금이 저렴한 새벽 시간대(경부하)에 PCS를 통하여 한전 전기를 배터리용량의 80% 충전(160kw) 후, 전력량 요금이 비싼 시간대(최대부하)에 시간당 100kw씩 방전	○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의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인버터(직류→교류)를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부하(전등, 전열)에 사용
장점	○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충전량이 일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 시 전기요금 미발생 ○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 유지관리 간단: 모듈 청소, 부식·손상여부 검사 등 ○ 설치공간의 다양화 가능(주 설치공간: 옥상, 야외, 건물 외벽 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 충전 시 별도 전기요금 발생 ○ 유지관리 복잡: 운영 데이터 별도 저장·관리, 온·습도 관리, 배터리 과충전 여부 점검 등 ○ 별도 공간 필요 *실내: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대피시설과 3m이상 이격, 배터리랙과 건물 벽면 사이 1m 이상 이격, ESS외 다른 시설로부터 1.5m이상 이격, 배터리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장소에 설치 등/ 실외: 별도 건물에 설치 등 	○ 기후 영향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 발생 가능

[별표 2]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요금 절감액(추정치) 비교

□ 100kw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단위: 원)

월 별	계절 및 적용일수 (A)	배터리 용량(B)	충전시			방전시			전기요금 절감액 (H-E)
			전기요금 단가 ¹⁾ (C)	월 충전량 (D=A*B*80%)	전기요금 (E=C*D)	전기요금 단가(F)	월 방전량 (G=D)	전기요금 (H=F*G)	
1	겨울철(31일)	200kw	53,8	4,960kw	266,848	131.7	4,960kw	653,232	386,384
2	겨울철(28일)	200kw	53,8	4,480kw	241,024	131.7	4,480kw	590,016	348,992
3	봄·가을철(31일)	200kw	49,8	4,960kw	247,008	84.7	4,960kw	420,112	173,104
4	봄·가을철(30일)	200kw	49,8	4,800kw	239,040	84.7	4,800kw	406,560	167,520
5	봄·가을철(31일)	200kw	49,8	4,960kw	247,008	84.7	4,960kw	420,112	173,104
6	여름철(30일)	200kw	49,8	4,800kw	239,040	160.4	4,800kw	769,920	530,880
7	여름철(31일)	200kw	49,8	4,960kw	247,008	160.4	4,960kw	795,584	548,576
8	여름철(31일)	200kw	49,8	4,960kw	247,008	160.4	4,960kw	795,587	548,576
9	봄·가을철(30일)	200kw	49,8	4,800kw	239,040	84.7	4,800kw	406,560	167,520
10	봄·가을철(31일)	200kw	49,8	4,960kw	247,008	84.7	4,960kw	420,112	173,104
11	겨울철(30일)	200kw	53,8	4,800kw	258,240	131.7	4,800kw	632,160	373,920
12	겨울철(31일)	200kw	53,8	4,960kw	266,848	131.7	4,960kw	653,232	386,384
계									3,978,064

* 위 자료는 충·방전 손실(효율)은 제외하여 적용된 자료임.

□ 태양광발전설비(100.8kw)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단위: 원)

월 별	계절 및 적용일수	설비용량	전기요금 단가 ²⁾ (A)	예상발전량(B)	전기요금 절감액(C=A*B)
1	겨울철(31일)	100.8kw	112.35	9,060kw	1,017,891
2	겨울철(28일)	100.8kw	112.35	10,190kw	1,144,847
3	봄·가을철(31일)	100.8kw	74.45	12,910kw	961,150
4	봄·가을철(30일)	100.8kw	74.45	12,920kw	961,894
5	봄·가을철(31일)	100.8kw	74.45	13,110kw	976,040
6	여름철(30일)	100.8kw	127.45	11,970kw	1,525,577
7	여름철(31일)	100.8kw	127.45	10,400kw	1,325,480
8	여름철(31일)	100.8kw	127.45	10,680kw	1,361,166
9	봄·가을철(30일)	100.8kw	74.45	10,430kw	776,514
10	봄·가을철(31일)	100.8kw	74.45	10,030kw	746,734
11	겨울철(30일)	100.8kw	112.35	7,820kw	878,577
12	겨울철(31일)	100.8kw	112.35	7,890kw	886,442
계					12,562,312

* 예상발전량 산정 기준: 태양광발전장치 분석 자료 참고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제출자료 재구성

11) (전기요금 단가) 충전시는 전기요금표(교육용(을) 고압A 선택1) 경부하 적용, 방전시는 전기요금표(교육용(을) 고압A 선택1) 최대부하 적용

12) (단가 산정 방법) 전기요금표(교육용(을) 고압A 선택1) 중간부하와 최대부하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1	소관기관	국립민속박물관	조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p>제 목 : 국립민속박물관회 다문화교육 사업 관여 부적정</p> <p>1. 내 용</p> <p>(사)국립민속박물관회¹⁾(이하 “박물관회”라 한다)는 ☆☆카드(2016년 9월~2017년 10월)와 ★★재단(2017년 11월~2018년 12월)으로부터 신용카드 사회공헌 활동 명목으로 기부금 100백만 원(2년간 50백만 원씩)을 지원 받아 “☆☆카드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사업”을 수행하였다.²⁾</p> <p>그런데 위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을 살펴본 결과, 박물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다문화꾸러미 강사 교육 사업’ 등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강사 교육, 다문화꾸러미 대여 운영기관 선정과 대여,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p> <p>이에 대해 박물관회는 ☆☆카드 등 지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다문화 교육 전문성과 운영 인력을 보유한 박물관과 협력·공동으로 추진한 것이고, 박물관은 박물관회의 사업 운영인력·전문성 부족과 기존의 다문화 교육의 효과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박물관회의 사업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예산집행 부분은 미관여)는 의견을 제시하였다.</p> <p>그러나 박물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p>					

업을 자문이나 조언 등이 아닌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신규 편성, 증액, 전용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사)국립민속박물관회 등 민간단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현지주의)

3. 회보여부 : 회보 불필요

1) 2001. 5. 30. 사단법인 설립 허가(문화관광부장관 제283호)

2) 위의 기간 동안에 2차례 수행하였으나, 2019년도 이후에는 ☆☆카드 등의 지원 내역 없음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2	소관기관	국립민속박물관	조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p>제 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p> <p>1. 내 용</p> <p>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은 2017년부터 2020년 3월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의 국외출장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총 114건(2017년 35건, 2018년 38건, 2019년 39건, 2020년 2건)에 대해 공무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p> <p>그런데 박물관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7건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면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1건)하거나 위원이 자신의 소속부서 직원을 심사(6건)하여 원안 의결하는 등 위의 규정과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p> <p>이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와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p> <p>2. 조치할 사항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등 관계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현지주의)</p> <p>3. 회보여부 : 회보 불필요</p>					